

22 (第111回-文教保社第5次)

<p>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별표 1중 초등학교(강서)의 서울오곡초등학교 란을 삭제한다.</p> <p>부 칙 이 조례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.....</p> <p>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조례안에 대한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</p> <p>안 제8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2. 성별비율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여성공무 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</p> <p>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조례안</p> <p>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 립·운영에 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.</p> <p>제 2 조(설립기관의 범위) ①공무원직장협의회 의 설립·운영에 관한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 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 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 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</p> <p>2.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 하는 공무원 또는 초·중·고등학교의 경우 에는 소속공무원의 수, 지리적 특성 등 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 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 하는 경우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</p>	<p>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,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.</p> <p>③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및 지방교육행정기 관의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에서 규정하 고 있는 시·도교육청 본청, 직속기관, 지역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단위를 말하 며, 실·국·과 및 담당관동 보조기관 및 보 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.</p> <p>제 3 조(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)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지휘·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: 법 령·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 무원에 대하여 지휘·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(직무대리 관 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 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명령 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)</p> <p>2.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: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업무 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(자료정 리·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 외한다)</p> <p>3. 예산·경리·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 무원 : 예산회계법·물품관리법 및 지방재 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 는 공무원(자료정리·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)</p> <p>4.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: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</p> <p>5.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: 감사·조 사·비밀·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 행하는 공무원</p> <p>6. 보안·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: 공공 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 한 보안·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</p> <p>7.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: 자동 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</p> <p>8.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 원 :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 원</p> <p>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인사관련업무를 주 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</p>
---	---